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송인규
주거 성남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부천시 이하 생략
검 사 박○○(기소), 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예○○크의 중국 수저우유○○자유한공사(이하 'S○○'라고 한다) 총경리(법인장)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김○○(남, 46세)는 S○○의 부총경리(부법인장)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5:51경 중국 수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출근인원 정리] 신중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13일 출근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밀접 접촉자/일상접촉자는 환자와 같은 공간에 얼마나 오랜 시간 체류했는지, 환자가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기 정의에 의거하여 수저우 공장은 밀접 접촉자가 없고 따라서 위험 지역 방문자 이외에는 격리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출근해야 하지만 미 출근자 3명 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작성하여 박○○, 허○○ 등 S○○ 임직원 22명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옆에 '전염우려로 출근거부'라고 기재한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

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① 피해자는 2020. 2. 14. 중국 정부나 수저우 시의 방역지침상 자가 격리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정당한 출근 지시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코로나 19로 인한 출근 여부는 법인 운영에 관한 공적사안이고 피해자는 부법인장으로써 방역지침에 따른 출근을 솔선수범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이를 독려해야 할 공적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당시 코로나 19에 따른 출근 여부는 임직원들 사이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 범위가 임직원 22명에게 한정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게시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 _____